

## 특별계약 교원 규정

1998. 3. 6. 제정

2014. 1. 29.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 제 3조제2항에 따라 특별계약 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 2 조 (특별계약 교원의 종류) ①이 규정에서 '특별계약 교원'이라 함은 본교 「교원인사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본교와의 특별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9.)

②특별계약 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초빙교수 : 교육 또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2. 객원교수 :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3. 겸임교수 : 국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육 또는 연구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4. 연구교수 : 연구소(원), 부속기관, 연구책임자,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5. 특임교수 :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 부여하는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6. 리서치 펠로우(연구교수) :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7.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제 3 조 (임용 및 재임용) ①특별계약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은 소속 기관장 또는 연구처장의 추천과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한다.

②특별계약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특별계약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은 통산하여 3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리서치 펠로우(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기간은 1년 이내의 단위로 한다.

⑤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교수, 리서치 펠로우(연구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의 임용기간은 해당 연구비의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 조 (복무) ①특별계약 교원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특별계약 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특별계약 교원의 복무에 대하여 임용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전임교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특별계약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 대학(원) 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⑤특별계약 교원은, 겸임교수를 제외하고,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처우) ①특별계약 교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초빙교수 : 임용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빙교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강의를 담당하는 초빙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고, 보수는 교비,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2. 객원교수 : 임용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객원교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강의를 담당하는 객원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고, 보수는 교비,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3. 겸임교수 : 강의를 담당하는 겸임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교비,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4. 연구교수 : 연구교수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보수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등 외부기금에서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5. 특임교수 : 특임교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교비,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6. 리서치 펠로우(연구교수) : 리서치 펠로우(연구교수)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보수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등 외부기금에서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7.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국책사업비 또는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지급한다.

②특별계약 교원에게는 교육, 연구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 6 조 (신분보장과 징계) ①특별계약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형의 선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계약 교원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인사 규정」의 면직, 휴직, 직위해제,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9.)

제 7 조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및 재임용 특칙) ①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 및 재임용은 소속기관장의 추천과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한다.

②산학협력중점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할 전공분야의 특성상 공개채용이 불가하거나 우수인력 확보 등의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총장은 본교 전임교원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교 전임교원의 신분은 유지되며, 산업체 근무경력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서 말하는 '산업체 경력'이라 함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 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⑥소속기관장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학협력실적 및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8 조 (산학협력중점교수 업무 특칙)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의 업무에 종사한다.

1. 산학협력 연구
2. 산학협력 교육
3. 창업 및 취업지원
4.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5. 산학협력과 관련한 국책사업 참여 및 진행

6. 기타 산학협력에 관련된 업무

제 9 조 (산학협력중점교수 복무 특칙) ①산학협력중점교수의 소속은 각 대학(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원), 부속기관, 산학협력단 등에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는 계약에 의한 연봉제로 하며, 보수 외에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복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교 교원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수행 관련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⑤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교육, 연구, 창업 및 취업 지원, 국책사업 수행 등 산학협력 업무에 집중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 기관에 겸직할 수 없다.

⑥산학협력중점교수의 한 학기 강의 책임시수는 4학점 이내로 한다.

제 10 조 (기타 사항) 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부 칙(1998. 3. 6 제정)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17 개정)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7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구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2003. 11. 7 개정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조건에 따라 인사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교원의 지위를 다시 부여한다. 다만, 당해 교원이 구 규정하에 근무한 기간은 다시 부여된 지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3. 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1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25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9.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